

201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나. 의안번호 : 제 1180 호

다. 제출일자 : 2016. 5. 10.

라. 회부일자 : 2016. 5. 1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2015	24,613	24,613	30,805	25,508	5,297	668	4,628	82.8

- 세입예산현액은 246억 1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308억 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55억 8백만원을 수납하고, 52억 97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6억 68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28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2.8%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243,832	63,447	-	300 (-300)	-	-	307,279	220,669	72,092	59,430	12,662	14,518 (4.7%)

- 당초 예산액 2,438억 3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34억 4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072억 79백만원으로, 이 중 71.8%인 2,206억 69백만원을 지출하고 23.5%인 720억 92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45억 1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1건에 3억원으로
- 관악산저류조 설치사업 3억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594억 3천만원으로 예산현액 3,072억 79백만원 대비 19.3%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26억 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45억 1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072억 79백만원 대비 4.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5	307,279	14,518	4.7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67억 91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1억 91백만원
-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 5억 36백만원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5	727,016	82,691	809,708	898,706	880,327	18,379	839	17,540	98.0

- 예산현액은 8,097억 8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정상적세외수입이 6,059억 6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037억 43백만원임.

수납액은 8,803억 2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87억 6백만원 대비 98.0%이며, 미수납액은 183억 7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0%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727,016	82,691	-	300 (-300)	116 (-116)	-	809,708	720,049	49,794	43,862	5,932	39,865 (4.9%)

- 당초예산액 7,270억 1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26억 91백만원

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97억 8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200억 49백만원임.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7억 9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98억 6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3건에 1억 16백만원으로
-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1건 40백만원
- 중량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 1건 9백만원
- 중량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1건 67백만원임.

○ 이체 : 해당없음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1건에 3억원으로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공공운영비) 1건 3억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 중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8건에 438억 62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59억 32백만원으로, 전

체 이월액 497억 94백만원은 예산현액 8,097억 8백만원 대비 6.1%임.(명시이월 5.4%, 사고이월 0.7%)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98억 6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097억 8백만원 대비 4.9%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15	809,708	39,865	4.9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292억 6백만원
- 예산절감 : 20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96억 91백만원
- 예비비 : 9억 48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15	20,609	-	20,609	21,506	21,506	-	-	-	100.0

- 예산현액은 206억 9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정상적 세외수입이 12백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95억 5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이 10억 38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은 215억 6백만원으로 전액 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20,609	-	-	-	1 (-1)	-	20,609	19,202	-	-	-	1,407 (6.8%)

- 예산액은 206억 9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2억 2백만원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4억 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1백만원으로
 -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 1건 1백만원임.
- 변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4억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06억 9백만원 대비 6.8%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5	20,609	1,407	6.8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7억 64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억 10백만원
- 예비비 : 3억 33백만원

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15	236,962	3,636	86,532	-	4,418	132,359	10,000	17	236,963	42,333	194,526	-	-	-	104
2014	268,593	5,001	78,387	-	6,573	151,835	26,666	131	268,593	28,281	132,359	-	104,317	-	3,636
2013	260,337	12,001	86,546	-	6,464	111,614	43,333	379	260,337	31,345	151,835	50,000	21,441	715	5,001

-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36억 36백만원과 전입금 865억 32백만원, 이자수입 44억 18백만원, 예치금회수 1,323억 59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00억원, 기타수입 1천 7백만원을 합한 2,369억 63백만원이며, 이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기본경비 등으로 기금총액의 17.9%인 423억 33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1,945억 26백만원, 다음연도로 1억 4백만원을 이월하였음.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5	24,613	24,613	30,805	25,508	5,297	668	4,628	82.8
2014	23,715	23,715	29,118	24,172	4,992	166	4,826	83.0
2013	10,279	10,279	14,270	9,606	4,592	157	4,435	67.3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246억 1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308억 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55억 8백만원을 수납하고, 52억 97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6억 68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2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2.8%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16~17, p.22~25)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25%로 총 61억 92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4년 결산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54억 3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추계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벌어졌으며,

일부세입 중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유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641	1,173	793	532	자치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사업 보조금 잔액(478백만원) -봉산도시자연공원 빗물저류조 사업 보조금 잔액(57백만원) 등
그외수입	107	1,752	791	1,645	분담금 선납액, 보험공제료 환급, 소송비용액, 각종 공사 정산금 등
지난연도수입	127	4,063	221	3,936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 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액’은 세입예산액 6억 41백만원 대비 183%인 11억 73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수추계에 계상하지 못했던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78백만원, ‘봉산도시자연공원 빗물저류조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5천 7백만원 징수 결정에 따른 것임.

- 이 중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사업’의 경우 송파구의 구비분담액(11억 16백만원) 미확보에 따른 사업의 축소로 보조금 잔액(4억 78백만원)을 전액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하여 5년(2015년~2019년)에 걸쳐 분납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2015.2.25.)한 상황으로,

-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단계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지급 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다음으로,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1억 7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7억 52백만원으로 약 16억 4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당초 세수추계에 계상하지 못했던 서울대 버들골 및 공대폭포 저류조 시설 공사비의 서울대 1회 분담금¹⁾ 8억 5천만원의 선납, 녹사평역 및 캠프김 유류정화비용 소송 승소에 따른 환수액(각종 소송비용 및 판결금) 5억 58백만원, 한강로일대 방재시설확충사업 도시가스 이설공사 환불금 6천 9백만원 등의 징수요인 발생에 따른 것임.
 - 이 중 소송에 따른 환수액 및 도시가스 이설공사 환불금은 사전예측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나, ‘서울대 버들골 및 공대폭포 저류조 설치 사업’의 경우, 당초 협약상 서울대 분담금(35%)을 준공이후 분담하는 조건이었지만 사업계획 변경²⁾으로 준공기한이 2017.5.30.일로 연장되면서 서울시는 서울대 분담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 서울대측은 당초 협약상의 준공날짜(2015.5.30.)에 맞추어 1회 분담금(8억 5천만원)을 납입해 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입장

1) 사업비용 분담 : 서울시 65%, 서울대 35%

2) (당초) 2015. 5.30. → (변경) 2017. 5.30. (24개월 연장)

에서 마다할 사항은 아니었지만 사업계획 변경 후 변경협약 미시행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서로 간에 행정의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판단됨.

다) 미수납액(결산서 p.16~17, p.135, p.139)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52억 96백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46억 28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차년도 이월액	46억 28백만원
- 하천사용료	50백만원
- 변상금 및 위약금	63백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 80백만원
- 그외수입	9억 61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31억 74백만원

- 이 중 지난연도수입(하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이 31억 74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천사용료 등 초기체납이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40억 63백만원 중 실제수납은 5.4%인 2억 21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초기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동시에, 직원들이 고질적 체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다음 [표]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내역 중 시효소멸³⁾이 4억 35백만원, 배분금액부족이 1억 45백만원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기에 앞서 독촉 및 압류 등 시효정지나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압류는 시효중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등 압류가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압류 조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23억 9천만원)”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6억 89백만원)” 그리고 “징수유예(3억 8천만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5,296,339
결손처분	무채산	87,728
	시효소멸	435,205
	배분금액 부족	145,158

3) 시효소멸의 법적근거(「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차년도 이월액	4,628,248
	무재산	69,221
	행방불명	40,926
	납세태만	2,389,501
	징수유예	380,00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688,671
	기타	1,059,929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243,832	63,447	-	300 (-300)	-	-	307,279	220,669	72,092	59,430	12,662	14,518 (4.7%)
2014	227,689	61,469	-	12 (-12)	50 (-50)	-	289,159	214,801	63,447	8,834	54,613	10,910 (3.8%)
2013	262,347	26,266	-	2,330 (-2330)	30 (-30)	-	288,613	196,636	61,469	1,000	60,469	30,508 (10.6)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2,438억 3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34억 47백만원, 예산현액은 3,072억 79백만원으로, 이 중 71.8%인 2,206억 69백만원을 지출하고 23.5%인 720억 9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45억 1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34, p.38~63, p.154~166)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45억 18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질오염원관리' 등 17건([표] 참고)에 해당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관리	329	70	259	79
2	하천관리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20	12	8	40
3	하천관리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47,294	14,834	3,390	7
4	하천관리과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1,086	581	504	46
5	하천관리과	신이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542	1,762	780	31
6	하천관리과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446	154	2,293	94
7	하천관리과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689	5453	1,236	19
8	하천관리과	도곡(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	1,240	240	1,000	81
9	하천관리과	불교거사림뒤 저류조 설치	134	0	134	100
10	하천관리과	삼릉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2,691	2,012	678	25
11	하천관리과	칭계천시민위원회 운영	40	28	12	30
12	하천관리과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00	65	35	35
13	하천관리과	불광천(마포구) 생태하천 조성	500	299	201	40
14	하천관리과	중랑천(동대문구)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 설치	150	66	84	56
15	하천관리과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	1	19	95
16	하천관리과	실시간 수방 분석·전파플랫폼 구축	150	0	150	100
17	하천관리과	중랑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51	246	105	30

-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집중호우시 저지대인 사당역 일대로 우수가 집중되어 상습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해소를 위한 방재시설(임시저류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86백만원 중 46.4%인 5억 4백만원이 불용 처리됨.

-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3년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대책 기본설계에 착수하였고 2014년 11월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기본계획(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실시 후 실시설계를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이수~과천 간 도로터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 종합계획 수립이전에 일단, 10년 빈도 강우에 대응 가능한 단기 배수개선대책을 수립(2015.8.)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음.
 - 불용의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2015년 2월 수리모형실험 등이 지연되어 5억원을 감추경(2015.7.27.) 했음에도 또다시 과다 불용이 발생된 점은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 주도면밀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며,
 -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수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도곡(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 사업은 대치동 일대를 30년 빈도 강우에 대처하기 위한 침수방지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4천만원 중 80.6%인 10억원이 불용 처리됨.
- 이는, 당초 빗물펌프장을 대치초교 앞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설치반대 민원으로 인해 설치위치가 변경(SETEC 옆) 되었고, 이에 따라 2015.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 공사 발주하여 11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비 일부를 이월할 경우 당시 차년도 예산편성액과 더해져 예산현액이 과다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불용처리 한 것임.

- 그러나, 만일 2016년 예산심사에서 편성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사계약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차년도 과다 예산편성 및 불용처리 모두 바람직하지 못했다 사료됨.
- ‘불교거사림뒤 저류조 설치’ 사업은 불광동 일대(북한산 자락)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4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이는 사업대상 부지에 2014년 12월 공원이 조성되어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행정불신 우려가 있었고,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에 대한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됨에 따른 것인데,
- 해당 사업부지는 이미 ‘우수유출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홍제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의 ‘유역 내 빗물저류조 설치 계획’에 포함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 해당 구청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사업대상지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사업(2013.1.~2014.12.)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관계기관 간 업

무협조가 너무나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의 공원조성 사업계획시 서울시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었다면 이 같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저류조가 공공을 위한 방재시설임에도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을 2021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실시간 수방 분석·전파플랫폼 구축’ 사업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수구역별 수방상황 예측가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천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음.
 - 동 사업은 “디지털 수도, 서울” 추진계획(2014.10.27.)에 의해 서울시 전체의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총 예산(20~30억원 수준)에 비해 편성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스템에 탑재되는 상용화 모델의 정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사전검토 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기획관 자문결과(2015.8.4.)

를 반영하여 동 사업을 전면취소 하였기 때문임.

- 결국,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총 소요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의욕만 앞세워 예산만 우선편성한 점 등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에 의한 예견된 불용 발생으로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하겠음.

다) 예산전용⁴⁾

- 예산의 전용사용은 없음.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⁵⁾(결산서 p.128)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3억원으로 ‘관악산저류조 설치’ 사업의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의 감리비에 3억원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음.

- 이는 해당사업의 사업기간 변경⁶⁾으로 감리원 배치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 예산을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상호 융통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4)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5)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6) (당초) 2012.1.6.~2015.5.30. → (변경) 2012.1.6.~2017.5.30. (승인일 2015.5.20.)

-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건			11,686	300	300		
하천관 리과	관악산저류조 설치	401-01 시설비	11,357	300	-	2015.9.25.	사업계획 변경(준공기한 연장)으로 감리원 배치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 예산을 시설비 일부에서 활용
		401-02 감리비	329	-	300		

바) 예비비

- 예산의 예비비는 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34, p.226)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26억 62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218억 4백만원 대비 58.1%에 해당하며, 사유별 현황 ([표] 참고)을 살펴보면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1건에 26억 21백만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3건에 58억 5백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2건에 9천만원, 보상협의 및 관급자재 구매 지연 2건에 41억 46백만원 등 총 8개 사업(126억 62백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15	
	건수	이월액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1	2,621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3	5,805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2	90
보상협의 및 관급자재 구매지연	2	4,146
계	8	12,662

[표]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사 고 이월액	집 행 잔 액	이월률	사 유
6건			18,015	12,454	316	69.1	
1	물순환정책과	마곡도시개발구역내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방안 연구	70	47	4	67.1	<사업계획 변경>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급수설비 설치비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필요한 용역기간 연장
2	하천관리과	용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3,996	2,259	139	56.5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지하철 지하 박스구조물 저축으로 인한 재설계 및 사업계획변경에 사업지연
3	하천관리과	공릉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6,918	3,380	113	48.9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선행공정인 토목, 건축공사 지연
4	하천관리과	개봉2빗물펌프장 토출관로 개선	250	236	0	94.4	<관급 및 외자재 구매 지연> '15.11.19 공사착공 이후 관급자재 구매입찰 하였으나 제작기간 120일 소요
5	하천관리과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4,000	3,911		97.8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관련절차 이행 및 KBS와 보상협의 추가기간 소요
6	하천관리과	성내유수지 정비	2,781	2,621	60	94.2	<사전절차 지연>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

- 이들 사업 중 ‘용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제기동역 인근 치수시설물의 수방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키기 위해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4억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88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9억 96백만원 중 56.5%인 22억 5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당초 제기동역 지하 박스구조물 상부를 횡단하는 유입관로를 설치하고 북측에 펌프장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시공터파기 및 시공측량 결과 지하철 박스구조물 저측으로 관로 매설이 불가하여 남측으로 펌프장 설치위치를 변경(2015.9.30.) 함에 따른 것임.
 - 건설공사의 특성상 지하상태에 따라 일부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지하구조물 세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 사업대상지 변경 이후에도 펌프장 설치위치에 다수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 사업비가 대폭 증가⁷⁾했다는 점 등은 비과학적이고 성급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음.
 - 따라서, 사업부지 변경으로 지장물 이설비용⁸⁾이 증가된 만큼 이설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한전, kt 등)과 협의

7) (당초) 3,634백만원 → (변경) 6,861백만원 (증) 3,227백만원)

8) (당초) 374백만원 → (변경) 3,358백만원 (증) 2,984백만원)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 설계용역 시에는 현장조사, 특히 지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용역사업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공릉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예산액 52억 7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4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9억 18백만원 중 48.9%인 33억 8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빗물펌프장 토목공사(가시설 설치공사) 중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부득이한 측면은 인정되나,
 - 사업 착공(2013.1.8.)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동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 추진 중에 수시로 안전점검 및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2015	727,016	82,691	809,708	898,706	880,327	18,379	839	17,540	98.0%
2014	700,546	62,839	763,385	836,504	825,195	11,309	295	11,014	98.6%
2013	603,883	43,553	647,436	676,365	666,424	9,941	274	9,667	98.5%

가) 개요

- 예산현액은 8,097억 8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059억 65백만원,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45억 3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74억 69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17억 38백만원인데,

이 중 수납액은 8,803억 2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87억 6백만원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183억 7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18~19, p.26~28)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세입과목으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그 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이 대표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증감액 (b)-(a)	사 유
경상적 세외수입					
하 수 도 사 용 료	566,880	584,227	571,530	17,347	-강남, 마곡 등 재건축개발 완료에 의한 입주 등으로 하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 증가
기 타 사 용 료	127	176	176	49	-최근 3년간 징수액의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량물재생센터 주차장운영 수입금이 평균치에 비해 다소 증가
기 타 사 업 수 입	37,883	37,381	36,686	-502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인하(-3.6%) 등으로 징수결정액 감소
공공예금이자 수 입	1,075	1,243	1,243	168	-전년도 이월사업비(83억원) 증가 등에 따른 재정운용 규모 증가로 이자수입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자 치 단 체 간 부 담 금	747	1,758	1,758	1,011	-광명시의 부담금 예산(국비, 13억원) 확보에 따른 선납부로 징수결정액 증가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4단계 및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비 감소 등의 사유로 하남시(-272백만원), 과천시(-10백만원), 의정부시(-16백만원)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감액하여 징수
일 반 부 담 금	37,881	39,573	39,393	1,692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35억원) 및 마곡재생수 공급사업비(59억원)의 하수도원 인자부담금 부과로 징수결정액 증가
과 태 료	32	11	11	-21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불특정 다수의 부정면탈자에 대한 부과로 세수추계가 어려움

시 도 비 반 환 금	1,064	447	446	-617	-자치구에 보조한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비의 집행잔액 감소로 징수결정액 감소
기 타 수 입 중 그 외 수 입	7,925	18,681	17,482	10,756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부지 매각대금(128 억원) 증가 -열병합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서남 바이오 가스 판매대금 미징수
지 난 년 도 수 입	6,887	10,450	6,843	3,563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기준으로 예산편 성이 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 인상 등으로 징수결정액 증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 세 계 잉 여 금	44,778	100,330	100,330	55,552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많아 차액발생 ※징수결정액(1,003억원) = 초과세입618억원+ 집행잔액 385억원
전 년 도 이 월 사업비	-	82,691	82,691	82,691	

-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는 예산액 5,668억 8천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5,842억 27백만원으로 그 차이는 173억 47백만원인데, 그 주원인은 강남, 마곡지구 등 재건축개발 완료에 의한 입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 재건축 개발사업의 완공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입주시기 예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세입예측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되므로 예측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기타사업수입'은 예산액 378억 83백만원 대비 5억 2백만원이 감소한 373억 81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차액 발생사유는 분뇨처리수수료 처리단가⁹⁾ 정산반영(-3.6%)과 물 재생센터로 반입되는 음폐수 및 침출수 반입량이 전년대비 감

9) 분뇨처리 단가: (추계) 4,776.36원 → (실제) 4,606.10원

소하였기 때문임.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경기도 5개 지역¹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가 처리함에 따라 이들 5개 지역이 물재생센터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협약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 예산액 7억 47백만원 대비 10억 11백만원 증가한 17억 58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증가사유는 광명시가 부담금 중 일부(국비, 13억원)를 확보하여 선납부 함에 따른 것임.
 - 참고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시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고지 또는 반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일반부담금’은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3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액 378억 8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95억 73백만원으로 16억 9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증가사유로는 당초 세수추계시 최근 5년간 평균징수액으로 추계하였는데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및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 사업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것으로,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시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

10)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하남시

하다 판단되므로 세수요인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점용료, 변상금, 판매대금(하수 건조슬러지, 소화가스, 바이오가스), 반환금(공사비, 각종 수당 등), 불용품매각대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 79억 25백만원 대비 107억 56백만원이 증가한 186억 81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 징수결정액 주요 증가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 부지 매각대금(127억62백만원)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 부지 매각비의 경우 SH공사로의 매각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추계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규모가 크고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예측이 어려웠다는 것은 서울시의 중요 사안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할 것임.

다) 미수납액(결산서 p.18~19, p.26~27)

- 미수납액 183억 79백만원 중 대부분은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으로 당해연도 미수납액 147억 72백만원(2014년 72억 83천만원)과 지난해도수입의 미수납액 27억 68백만원(2014년 28억 67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14년도 113억 9백만원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62.5%)한

것으로, 하수도사용료 초기체납의 증가가 결국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초기체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회계수납·관리체계 개선 및 장기체납액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징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환경을 조성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18,379,084
결손처분		838,677
	무재산	0
	행방불명	0
	시효완성	838,677
	공매시배당무	0
	기타	0
차년도 이월액		17,540,407
	징수유예	0
	행방불명	146,967
	무재산	233,843
	납세태만	16,533,93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625,664
	기타	0

○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참조)을

살펴보면, 미수납액 183억 79백만원 중 결손처분¹¹⁾ 8억 39백만원이고 시효완성이 20,138건에 8억 39백만원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됨.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비반환금 미납내역

(단위: 원)

연번	금 액	사 업 명	납부의무자	비 고
1	803,630	지선하수관거 시비보조금 반납	성동구청 (치수과장)	2016.1.28.(완납)
계	803,630			

- 미수납액 중에는 성동구청의 시비반환금 미납(2016.1.완납)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재정여건을 이유로 시비보조금 반납을 미루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한편, 하수도사용료의 1백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961건에 29억 41백만원이며, 이 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채납 금액이 17억 43백만원(59%)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액채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짐.

11)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보다 적을 때
2. 채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백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누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건 수	금 액
계	961	2,941
1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742	1,198
300만원이상 ~ 600만원미만	132	520
6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41	302
1,000만원이상	46	921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727,016	82,692	-	300 (-300)	116 (-116)	-	809,708	720,049	49,794	43,862	5,932	39,865 (4.9%)
2014	700,546	62,839	476 (-476)	-	213 (-213)	-	763,385	642,175	82,691	9,680	73,011	38,519 (5.0%)
2013	603,883	43,553	614 (-614)	290 (-290)	93 (-93)	19 (-19)	647,436	530,671	62,839	5,846	56,993	53,926 (8.3%)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7,270억 1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26억 9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97억 8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200억 49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7억 9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98억 65백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35, p.64~109, p.167~193)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율 30% 이상 사업(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등 26건에 해당됨.([표] 참고)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재생계획과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1,523	23	1,500	98
2	물재생계획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12,503	7,310	968	8
3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30	15	15	50
4	물재생계획과	효자배수분구 방재성능 향상 증기대책	4,784	599	4,185	87
5	물재생계획과	석관동 223~332번지 침수방지	1,900	1,471	429	23
6	물재생계획과	대흥동 6번지 주변 하수관로 개량	800	506	294	36
7	물재생계획과	도화동 566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130	62	68	52
8	물재생계획과	강남대로 78길 하수관로 신설	1,000	-	1,000	100
9	물재생계획과	역삼로 156 주변 하수관로 신설 개량	1,500	-	1,500	100
10	물재생계획과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6,000	5,429	571	10
11	물재생계획과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침수해소	2,588	1,752	836	32
12	물재생계획과	역삼동 814~서초동 1304 하수관로 확장	700	324	376	54
13	물재생계획과	남가좌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6,460	4,993	1,467	23
14	물재생계획과	신월3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4,158	3,828	330	8
15	물재생계획과	신월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	4,298	702	14
16	물재생계획과	화곡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	4,648	352	7
17	물재생계획과	화곡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4,920	4,582	338	7
18	물재생계획과	도림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7,713	7,103	610	8
19	물재생계획과	예비비	948	-	948	100
20	물재생계획과	지방채상환	9,636	9,197	439	5
21	물재생시설과	차집관로 성능개선	11,764	6,141	623	5
22	물재생시설과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8,605	5,494	1,269	15
23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5,732	32,469	3,263	9
24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60,642	57,620	3,023	5
25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33,591	29,865	3,526	10
26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6,133	5,772	361	6

- ‘호자배수분구 방재성능 향상 중기대책’ 사업은 2010년 광화문 침수피해 사고 이후 침소해소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기 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47억 84백만원 중 87.5%인 41억 85백만원이 불용됨.
-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0년 광화문 일대 침수 이후 단기대책(2011.8.)의 일환으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30년 강우빈도, 95mm/hr) 달성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방재시설¹²⁾을 설치·보완(2011년~2013년)하였고,
- 설치된 시설물의 실제 효과 검증 및 침수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추가 대안¹³⁾을 검토하고자 실시한 용역¹⁴⁾결과,
- 단기대책으로 설치된 시설로는 30년 강우빈도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수리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하수관로 개선공사(3개소) 즉, ‘호자배수분구 방재성능 향상 중기대책’인 동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 2011년 이후 설계 강우강도(30년 강우빈도, 95mm/hr) 이하의 강우로 인해, 동 용역수행시 수리모형의 검·보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위자료 등이 부족하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대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과를 재확인한 후

12) 2011년~2012년: 저류조 신설, “C”자형 구간 통수능 확대 및 관로 경사 개선
2013년도 이후: 경복궁 주변 관로 유로 변경, 빗물관리 시설(침투저류조 등) 설치 등

13) 관로개선, 저류조 및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추가 설치 등

14)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보고서(2013.8.)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불용된 것임.

- 따라서, 동 사업편성의 근거가 된 2013년 시행된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하겠으며,
 - 만약 2013년에 시행된 용역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행됐다면 동 사업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강남대로 78길 하수관로 신설’ 사업과 ‘역삼로 156 주변 하수관로 신설 개량’ 사업은 강남역 일대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역삼초교 주변 하수관로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각각 예산현액 10억원, 15억원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10년 집중호우에 따른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이후 침수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해소하려던 것으로 강남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2011.8.~2012.12.) 하였는데,
 - 2015년 2월 준공된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지대와 저지대의 유역경계 조정 대상지에 사업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201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 침수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중복투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은 적절한 조치였다 사료되나,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분석이 이루어 졌다면 이처럼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는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은 낳지 않았을 것임.
- 다음으로, 서남과 탄천으로의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606억 42백만원 중 576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5.0%인 30억 23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357억 32백만원 대비 324억 69백만원을 지출하고 9.1%인 32억 63백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 이들 민간위탁금의 경우 서울시가 정산과정을 거쳐 세부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고는 있지만, 외부회계기관 등을 통해 비정산비의 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정산비의 과다 책정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 측면에서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 세부집행내역(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a)	2015년 협약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b)-(c)	협약액 대비 집행률 (%)
합 계		60,642,400,000	59,849,932,000	57,619,898,660	2,230,033,340	96.3
정 산 비	계	46,477,544,000	46,477,544,000	44,247,584,690	2,229,959,310	95.2
	전력비	14,730,796,000	14,730,796,000	12,645,580,510	2,085,215,490	85.8
	슬러지처리비	11,804,548,000	11,804,548,000	11,491,393,800	313,154,200	97.3
	시설비	12,351,000,000	12,351,000,000	12,970,474,000	-619,474,000	105.0
	약품비	7,578,200,000	7,578,200,000	7,127,366,780	450,833,220	94.1
	주민협의회 운영비	8,000,000	8,000,000	7,769,600	230,400	97.1
	예산절감성과금	5,000,000	5,000,000	5,000,000	0	100.0
비 정 산 비	계	14,164,856,000	13,372,388,000	13,372,313,970	74,030	100.0
	인건비	8,697,846,000	8,505,189,000	8,505,189,000	0	100.0
	기타약품비	762,058,000	550,615,000	550,615,000	0	100.0
	연료비	125,114,000	66,899,000	66,899,000	0	100.0
	수도비	98,593,000	103,434,000	103,434,000	0	100.0
	수선유지비	956,450,000	863,333,000	862,804,820	528,180	99.9
	안전점검비	178,066,000	250,458,000	250,458,000	0	100.0
	보험료	222,319,000	237,323,000	237,323,000	0	100.0
	유형자산구입비	44,462,000	18,638,000	18,638,000	0	100.0
	차량유지비	33,088,000	18,227,000	18,227,000	0	100.0
	조경관리비	167,344,000	168,522,000	168,522,000	0	100.0
	체육시설관리비	153,832,000	139,928,000	139,928,000	0	100.0
	기타경비	388,299,000	167,124,000	167,124,000	0	100.0
	일반관리비	125,344,000	134,352,000	134,818,160	-466,160	100.3
	이윤	917,635,000	932,674,000	932,668,890	5,110	100.0
부가세	1,294,406,000	1,215,672,000	1,215,665,100	6,900	100.0	

[표]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 세부집행내역(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a)	2015년 협약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b)-(c)	협약액 대비 집행률 (%)
합 계		35,731,300,000	34,510,943,000	32,468,364,210	2,042,578,790	94.1
정 산 비	계	25,690,547,000	25,183,742,000	23,142,257,908	2,041,484,092	91.9
	전력비	8,191,225,000	7,684,420,000	6,698,370,810	986,049,190	87.2
	슬러지처리비	4,524,594,000	4,524,594,000	3,606,368,480	918,225,520	79.7
	시설비	11,270,000,000	11,270,000,000	11,513,879,448	-243,879,448	102.2
	탈수약품비	1,661,728,000	1,661,728,000	1,289,909,530	371,818,470	77.6
	행사지원비	30,000,000	30,000,000	20,729,640	9,270,360	69.1
	주민협의회	8,000,000	8,000,000	8,000,000	0	100.0
	예산절감성과금	5,000,000	5,000,000	5,000,000	0	100.0
비 정 산 비	계	10,040,753,000	9,327,201,000	9,326,106,302	1,094,698	100.0
	인건비	6,672,108,000	6,097,267,000	6,097,267,000	0	100.0
	기타약품비	246,721,000	84,196,000	84,196,000	0	100.0
	연료비	76,522,000	48,915,000	48,915,000	0	100.0
	수도비	49,714,000	45,273,000	45,273,000	0	100.0
	수선유지비	450,493,000	525,054,000	525,054,000	0	100.0
	안전점검비	160,744,000	105,178,000	105,178,000	0	100.0
	보험료	98,397,000	106,642,000	106,642,000	0	100.0
	유형자산구입비	26,961,000	22,296,000	22,296,000	0	100.0
	조경유지비	0	11,569,000	11,569,000	0	100.0
	차량유지비	36,719,000	37,064,000	37,064,000	0	100.0
	복개공원비	373,605,000	369,035,000	369,035,000	0	100.0
	기타경비	192,233,000	192,299,000	192,299,000	0	100.0
	일반관리비	46,249,000	126,105,000	125,194,258	910,742	99.3
	이윤	716,392,000	708,381,000	708,296,141	84,859	100.0
부가세	893,895,000	847,927,000	847,827,903	99,097	100.0	

다) 예산전용(결산서 p.122)

- 금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등에 총 3건 1억 1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감액	증액		
3건				24,396,546	116,373	116,373		
1	중량물재생센터관리과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206-01 재료비	5,294,458	40,382	-	2015.12.7.	준공무직 3명의 퇴직금 및 기간제근로자 6명의 근로기간 연장(18일)으로 인건비가 증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646,065	-	40,382		
2	중량물재생센터관리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8,880,357	8,991	-	2015.3.10.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이 예산 편성시 기준액 대비 110%에서 실제 지급비율은 120.3%로 상승
			303-02 성과상여금	428,605	-	8,991		
3	중량물재생센터관리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8,871,366	67,000	-	2015.10.28.	2015.6.1. 청원경찰 2명 전입
			101-02 기타직보수	275,695	-	67,000		

- 중량물재생센터의 예산전용 발생은 준공무직 3명의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금, 성과상여금 부족 및 청원경찰 2명 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 이 중, 준공무직 3명의 퇴직금은 조기퇴직에 따른 것으로 금회 예산에 미편성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성과상여

금의 경우 기준액 기준 지급비율 상승¹⁵⁾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인력운영의 보수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됨.

- 다만, 청원경찰 2명 전입에 따라 인건비를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시 인력충원계획이 없다가 2015년 5월 구두요청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사전계획이 없던 사항을 전용을 통해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의회 승인을 득한 예산편성 내에서 부득이하게 융통하는 것 이외에는 가급적 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결산서 p.129)

- 금회 예산의 변경은 1건에 3억원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사업의 재료비 3억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3억원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음.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건				12,644,750	300,000	300,000		
1	난지물재생센터관리과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206-01 재료비	2,654,613	300,000	-	2015.12.17.	계획대비 폐기물 처리량 증가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9,990,137	-	300,000		

15) (예산편성시) 110% → (실제지급) 120.3%

- 이는 예산 편성당시 건조시설의 가동(2014.7. 준공)으로 수도권 매립지 처리물량(슬러지 고형화)이 전년대비 28,500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전년대비 23억 33백만원 감액한 21억 1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반입된 전체 폐기물 처리량이 당초 예상(113,000톤/년) 대비 29,000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운영비 중 폐기물 처리비 17억 5천만원의 부족분 중 3억원은 재료비에서 전용하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의 전력비 일부(5억 52백만원) 융통과 2016년 예산활용 등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따른 것임.
 - 예산편성 당시 건조시설 가동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처리물량 감소만 고려하고 반입 폐기물량의 증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편성 자체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문제가 있으며,
 - 늘어나는 반입폐기물량의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건조시설 등 자체처리 시설의 용량의 적정성 검증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여겨짐.
 - 또한, 재료비에서 3억원을 융통해 준 사실에 입각할 때 3억원을 융통하고도 재료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당초 재료비 편성이 과했던 것은 아닌지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바) 예비비

- 예산의 예비비는 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27)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59억 3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5억 95백만원 대비 61.8%에 해당하며,

사유별 현황([표] 참고)을 보면 사전절차 지연 1건에 8억 48백만원, 장애요인발생 3건에 49억 19백만원, 기타 2건에 1억 64백만원으로 총 6건(59억 31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15		2014		2013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사전절차지연(a)	1	848	4	3,525	8	12,572
장애요인발생(b)	3	4,919	10	20,294	7	4,349
유관사업지연(c)	-	-	6	4,715	4	16,174
사업계획변경(d)	-	-	1	4,049	3	17,323
기 타(e)	2	164	14	40,428	6	6,575
계	6	5,931	35	73,011	28	56,993

[표] 30%이상 사고이월 사업 현황(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사유
3건			6,080	5,189	54		
1	물재생계획과	진관동 북한산로 하수관 개선	1,400	721	0	51.5	우기철 하천내 공사중지에 따른 여름철 공사중지(3개월)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2	물재생계획과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000	848	54	84.8	공사발주 사전절차이행 등으로 사업 착공 지연
3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매입비	3,680	3,620	0	98.4	토지수용재결(2015.11.19.)되어 수용개시일(2016.1.12.)까지 부지매입비 지급예정

- ‘진관동 북한산로 하수관 개선’ 사업은 예산액 14억원 중 51.5%인 7억 2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는 현장여건에 따른 하수관로 노선의 변경에 따른 것임.
 - 관로의 노선 변경은 기존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하수의 우회 처리를 위한 임시관로 설치 설계노선이 예상치 못했던 지장물 간섭으로 설계변경을 수반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장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하여 발생하였는바,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하수관로 사업의 경우 성급한 예산편성에 앞서 보다 정확한 사전조사를 선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여의도동 일대 노후·불량 사각형거 기능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10억원 중 84.8%인 8억 4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는 실시설계 시행(2015.4.~2015.8.)과 계약심사 등 공사발주 사전절차에 따른 공사착공(2015.10.22.) 지연으로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품질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은 당연히 있어야할 사전 절차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기간을 고려

하여 공사를 단계별로 구분한다거나 또는 설계착수를 앞으로 더 당긴다든지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회계연도 내에 소진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참고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고이월 중 원인행위 미필현황 ([표] 참고)을 살펴보면 원인행위 미필 건수가 총 3건으로 하수관로 종합정비 1건, 하수도 개량공사 2건에 해당함.

[표] 사고이월 사업 중 원인행위미필 현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 (과)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원인행위	원인행위 미필	계	
물재생계획과	진관동 북한산로 하수관 개선	1,400	1,400	700	21	721	112
물재생계획과	반포 센트럴시티 주변 하수관로 개량	2,000	2,000	474	104	578	0
물재생계획과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000	1,000	704	144	848	5
계		4,400	4,400	1,878	269	2,147	117

- 현행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16)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부대경비의 경우 원인행위미필 상태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상 문제는 없으나,

이처럼 원인행위 미필 상태에서 이월되는 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관련공종의 사고이월에 따른 것으로 원인행위 미필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공종의 사고이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1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5	20,609	-	20,609	21,506	21,506	-	-	-	100
2014	19,154	-	19,154	18,857	18,857	-	-	-	100
2013	15,525	57	15,582	13,713	13,713	-	-	-	100

가) 개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06억 9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정상적세외수입이 1천 2백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95억 5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이 10억 3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15억 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 (결산서 p.20, p.29)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206억 9백만원 대비 104.3%로 215억 6백만원이며, 예산현액과 8억 97백만원 (4.3%)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회(1.6%, 2억 97백만원) 대비 세수추계의 차가 다소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큰 세입과목으로는 ‘순세계잉여금¹⁷⁾’이 대표적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계(10억 38백만원)보다 11억 9천만원이 크게 발생(22억 28백만원)했다는 것은 2014년도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한강수질개선 관련 사업계획 및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 유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2	11	11	-1	예금이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0	6	6	6	주민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등
보조금					
기금	19,559	19,261	19,261	-298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감소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등	1,038	2,228	2,228	1,190	‘14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증가 등

-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은 없었으나, 징수결정액 6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2014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6백만원)에 따른 것으로, 정

17)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결과 초과징수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합계에서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금액

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정산이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사전에 반납액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195억 5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억 98백만원 감소한 192억 61백만원인데,
 - 이는 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라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가 감소하여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은 서울시가 징수하여 국가세입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고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한겨레, 2016.5.26.)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잉여금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과잉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서울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서울시가 받는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20,609	-	-	-	1 (-1)	-	20,609	19,202	-	-	-	1,407 (6.8%)
2014	19,154	-	-	-	1 (-1)	-	19,154	16,629	-	-	-	2,525 (13.2%)
2013	15,525	57	-	-	3 (-3)	-	15,582	12,783	-	-	-	2,799 (18%)

가) 개 요

- 예산액은 206억 9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2억 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4억 7백만원임.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35, p.110~115, p.194~196)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1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등 3건에 해당됨.([표] 참고)

[표] 불용률 1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1	물순환정책과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595	494	71	12%
2	물순환정책과	잠실상수원 관리	576	454	122	21%
3	물순환정책과	인력운영비	1,538	1,323	215	14%

- ‘**잠실상수원 관리**’사업은 예산액 5억 76백만원 중 21%인 1억 22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2015년 강수량 저하로 한강에 쓰레기 유입량 감소에 따라 수중청소용역비 및 폐기물위탁처리비 등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인건비)**’는 예산액 15억 38백만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중 14%인 2억 15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의 휴일 초과근무 수당 감소와 퇴사 2명에 따른 신규 채용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다) 예산전용(결산서 p.123)

[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변경일자	사유
				감액	증액		
1건			49,997	659	659		
물 순환 정 책 과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32,681	659	-	2015.11.30.	‘15. 7월 청원경찰 보수체계 변경(인사과-18627호(2015.7.2.))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출액 증가
		303-02 직급보조비	17,316	-	659		

-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에서 65만 9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이는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보수체계 변경¹⁸⁾(2015.7.1.시행)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18) 「청원경찰법」 제6조 개정(2014.12.30.)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개정(2015.6.30.)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단계가 재직 기간에 따라 3단계에서 4단계 체계로 변경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표] 참조)

라) 이체·변경사용

- 이체·변경사용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사업비등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다음연도이월액
2015	236,962	3,636	86,532	-	4,418	132,359	10,000	17	236,963	42,333	194,526	-	-	-	104
2014	268,593	5,001	78,387	-	6,573	151,835	26,666	131	268,593	28,281	132,359	-	104,317	-	3,636
2013	260,337	12,001	86,546	-	6,464	111,614	43,333	379	260,337	31,345	151,835	50,000	21,441	715	5,001

* 관련 용어

수입	출연금 (법정적립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소방방재청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 국비분담금)
	용자금 회수	민간에 용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 및 이자수입 (위험건축물 정릉 스카이APT의 임대주택 임차비용 용자금)
	예탁금 상환금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예치금 회수	이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수금	타 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원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기본경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수당 등)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상환	타 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기타지출	기금전출금(풍수해 재난지원금 국비분담금 전출-구호계정)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된 금액 (2015년도말 의무적립액 : 175,082백만원)

가) 개요

- 복지건강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소관 재난관리기금¹⁹⁾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당초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재해, 재난)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물순환안전국 소관임.

나) 기금 총괄(결산서 p.231)

-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²⁰⁾은 전년도말 현재액 2,026억 62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²¹⁾ 909억 67백만원과 사용액²²⁾ 423억 33백만원의 차를 합산한 2,512억 9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486억 34백만원 흑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2,662	48,634	90,967	42,333	251,296

19)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재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 당해연도말 현재액 = 시금고 예치금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1)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이자수입+기타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22) 당해연도 사용액 = 목적사업비

- 흑자운영 사유는 2010년, 2011년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비융자성 사업비 1,732억원을 2014년에 전액 상환완료함에 따라 당해연도에는 융자상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2015년 강우량 감소로 수해복구비 사용이 없었기 때문임.([표] 참조)

[표] 최근 5년간 예수금 차입 및 상환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수금(재정투융자기금)	
	차입	상환
2010	76,000	-
2011	97,200	-
2012	-	50,000
2013	-	20,000
2014	-	103,200
계	173,200	173,200

다) 기금 수입결산(결산서 p.234 ~ 235)

-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 2,049억 17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36억 36백만원을 포함한 수입계획현액이 2,085억 53백만원이었으나, 2,369억 6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204,917	204,917	3,636	208,553	236,963	236,963

- 상기 [표]의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6억 36백만원에 수입계획이 2,049억 17백만원으로, 수입계획 현액은 당초 수입계획액 대비 2%(36억 36백만원)가 많은 2,085억 53백만원에 해당함.
- 여기서, 징수결정액(수납액)이 수입계획현액보다 284억 1천만원이 증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재난예방, 응급복구)의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한 것과 이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는 법적 사용기준²³⁾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난예방이나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담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라) 기금지출 결산(결산서 p.236~238)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2,049억 17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36억 36백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2,085억 53백만원이었으나 2,368억 59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4백만원을 이월시킴.([표]참조)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204,917	204,917	3,636	208,553	236,859	104

-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금액 1억 5천만원 대비 69.3%인 1억 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용역 1건에서 발생하였음.([표] 참조)

[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재배정부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유
1건			131	104	
1	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	물순환 정책과	131	104 (79.4%)	녹조 발생에 따라 '15년 10월에 기금 심의, 예산 배정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 이월함

- 금회 사고이월은 연구용역 1건으로 심의금액 1억 31백만원 중 79%인 1억 4백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동 사업은 2015년 한강 녹조현상 장기화에 따라 녹조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1회 유찰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용역착수가 지연되었음.
-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수행가능 한 연구과제 범위 등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긴급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바, 긴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여겨짐.

※ [붙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정권고사항	소관실국
1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지양	<p> <집행잔액> 복지본부 안전총괄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획조정실 <u>물순환안전국</u>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경제진흥본부 </p> <p> <사고이월>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u>물순환안전국</u>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p>

1.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지양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실·본부·국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복지분부는 예산현액 4조 6,997억원 중 1,454억원, 안전총괄분부는 예산현액 1조 859억원 중 879억원, 기후환경분부는 예산현액 5,396억원 중 69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그 밖에도 기획조정실, 물순환안전국,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경제진흥본부 등을 포함한 8개 실·본부·국의 경우, 2015 회계연도 뿐만 아니라 2014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예산집행잔액 발생규모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특히 2015회계연도의 경우, 집행 잔액 이른바 불용액(7,462억원) 중 61.4%, 4,578억원이 “예산집행잔액”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복지본부 1,210억원, 안전총괄본부 548억원, 기후환경본부 483억원, 물순환안전국 367억원, 교통방송 295억원, 여성가족정책실 228억원, 도시교통본부 188억원, 시민건강국 171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산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중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집행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실집행 가능액을 정밀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집행잔액(7,462억원) 중 24.0%, 1,787억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주택건축국 331억원, 안전총괄본부 331억원, 도시교통본부 213억원, 경제진흥본부 196억원, 물순환안전국 171억원, 기후환경본부 16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산편성시 예측되지 못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사업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큰 실·본부·국에서는 예산편성전 사업계획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본부·국별 집행잔액 현황 (2015~2013)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2015	2014	2013
복지본부	145,428	99,340	68,012
안전총괄본부	87,952	137,807	132,334
기후환경본부	69,193	48,038	60,239
기획조정실	67,750	110,348	35,005
물순환안전국	55,791	-	-
도시교통본부	44,168	51,213	83,993
주택건축국	41,857	23,836	38,989
경제진흥본부	33,965	31,202	24,007

※ 참고 : '15년부터 도시안전본부는 안전총괄본부 및 물순환안전국으로 조직이 개편됨

- 또한 2015회계연도 주요 실·본부·국의 사고이월현황을 살펴 보면, 푸른도시국은 예산현액 4,134억원 중 456억원, 기후환경 본부는 예산현액 5,396억원 중 288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그 밖에도 문화본부, 물순환안전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등을 포함한 7개 실·본부·국의 경우, 2015회계연도뿐만 아니라 2014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높게 나타납니다.
-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관련 공사비 증가와 주민불편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사고이월 발생가능성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2015~2013)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2015	2014	2013
푸른도시국	45,687	41,884	69,550
기후환경본부	28,845	8,472	4,188
문화본부	20,455	6,366	6,678
물순환안전국	18,594	-	-
안전총괄본부	15,537	235,439	263,374
도시재생본부	14,124	11,863	-

※ 참고

- '15년부터 도시안전본부는 안전총괄본부 및 물순환안전국으로 조직이 개편됨
- '15년 1월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본부 신설 (도시계획국 및 주택정책실에 분산된 재생기능을 통합)

나. 시정권고

- 매 회계연도마다 특정 실·본부·국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 규모가 큼니다. 사업추진 의욕만 앞세워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예산불용과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